

AI·DX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

2026. 04. 01. 최초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 AI·DX교육지원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AI·DX 교과목 개발 지원
2. AI 교수학습 혁신
3. 교수 및 학생 AI 역량강화
4. 산학협력 AI·DX 교육
5. AI 교육 콘텐츠 개발
6. AI·DX 실습 인프라 운영
7. 산업체 및 지역주민 AI·DX 교육 지원
8.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직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센터장은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센터에는 책임교수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, 이는 총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AI·DX 교육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AI·DX사업추진단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그 역할을 대리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은 5명 내외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
2. 센터 프로그램 평가 및 결과에 대한 환류
3. AI·DX 교육 개선, AI·DX 교수역량개발 지원, AI·DX 학생학습역량 개선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⑥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의 직원 또는 연구원으로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5조(기타)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